조기졸업에 관한 규정

제 정 2009. 3.
개 정 2012. 7.
개 정 2013. 1.
개 정 2013. 2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9조에 의거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상 및 정의) 조기졸업이란 학칙 제9조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4조(신청자격)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학기 취득예정학점을 가산하여 학칙 제29조에서 정한 졸업학점을 충족 할 수 있는 자로서, 소속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2. 삭제 (2012.9.7)

제5조 (대상자 선정)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제4조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소속 학부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 (자격상실)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학칙 제54조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
2. 학칙 제22조 제2항에 의해 휴학한 학생
3.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

제7조 (조기졸업 사정기준) ①조기졸업의 사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학칙 제29조에서 정한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전 학년 평점평균이 4.25 이상인 자.
2. 삭제 (2012.9.7)
3. 삭제 (2012.9.7)

②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로 졸업을 연기 할 수 있다.

③조기졸업 대상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후 본조 1항의1에서 정하는 평점평균에 미달하거나, 본 대학 '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'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졸업을 할 수 없을 경우 4학년 1학기에 최소 2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수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 (조기졸업 사정시기) 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해당학기의 졸업사정 기간(1학기 신청의 경우 여름학기 포함, 2학기 신청의 경우 겨울학기 포함)에 한다.

제9조 (기타사항) ①조기졸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②2010년 현재 4학년 재학생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2010학년도 현재 3학년 이하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변경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단, 2011년 10월 이전에 편입한 외국인 유학생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